의 안 번 호			제428호		
의		결	2023.		
연 -	월	일	(제	회)	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이상정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9월 27일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상정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8 발의연월일 : 2023년 9월 27일

발 의 자 : 이상정, 김정일, 박봉순,

안지윤, 안치영, 조성태,

박진희

1. 제안이유

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조례 규정의 정비를 통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,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을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라 규정한 용어의 정의, 도의 책무, 도민의 책무, 민간의 참여조성 조문을 상위법 내용으로 인용 정비하고자 함 (안 제2조~제6조, 제9조)
- O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을 확대함 (안 제7조의2)
- O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함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규정 : 붙임

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3 - 호

다. 협 의 : 복지정책과

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"를 "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"을 "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"으로, "예우와"를 "예우 및"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"(용어의 정의)"를 "(정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부분 중 ""희생·공헌자"라 함은"을 ""희생·공헌자"라"으로, "법령이"를 "법령에서"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"일제로부터"를 "일제로부터의"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수호와"를 "수호 또는"으로 하며, 같은 호 다목 중 "대한민국의"를 "대한민국"으로 하고, 같은 호 라목 중 "생명과"를 "생명 또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"을 ""국가보훈대상자"라"으로, "유가족"을 "유족 또는 가족"으로, "예우와"를 "예우 및"으로 하고, 같은조 제3호 중 "이라 함은"을 "이란"으로, "예우와 지원에"를 "예우 및 지원과"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예우와 지원대상)"을 "(예우 및 지원 대상)"으로 하고,

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"예우와 지원대상"을 "예우 및 지원 대상"으로, "국가보훈처장"을 "국가보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4조 중 "나라사랑 정신"을 "나라사랑정신"으로, "조성하는데"를 "조성하기 위하여"로 한다.

제5조 중 "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"를 "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"으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예우와 공훈 선양사업)"을 "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희생·공헌자의 예우와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"을 "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"으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조례가"를 "조례에서"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다음"으로, "요건을 모두 갖춘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전몰군 경의 유족(이하 "유족"이라 한다)"을 "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1항에 따른"을 "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에 대한"으로 한다.

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4조제1항제3호·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·순직군경의 유족(이하 "유족" 이라 한다).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.
- 2.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

제9조의 제목 "(민간의 참여조성)"을 "(민간의 참여 조성)"으로 하고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 중 "선양,"을 "선양 및"으로, "여건조성"을 "여건 조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</u> <u>지원에 관한 조례</u>	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「국가보훈</u>	제1조(목적) <u>조례는 「국가보</u>
<u>기본법」</u>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	훈 기본법」
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	
자에 대한 <u>예우와</u> 지원에 관하	<u>예우 및</u>
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	
적으로 한다.	
제2조 <u>(용어의 정의)</u> 이 조례에서	제2조 <u>(정의)</u>
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	
같다.	
1. <u>"희생·공헌자"라 함은</u> 다음	1. <u>"희생·공헌자"란</u>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	
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	
국가보훈관계 <u>법령이</u> 정하는	<u>법령에서</u>
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	
람을 말한다.	
가. <u>일제로부터</u> 조국의 자주	가. <u>일제로부터의</u>
독립	
나. 국가의 <u>수호와</u> 안전보장	나 <u>수호 또는</u>
다. <u>대한민국의</u> 자유민주주의	다. <u>대한민국</u>

의 발전

라. 국민의 <u>생명과</u> 재산의 보 호 등 공무수행

- 2. <u>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</u> 희생·공헌자와 그 <u>유가족</u>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<u>예우와</u> 지원을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<u>이라 함</u> 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<u>예</u> 우와 지원에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제3조(예우와 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<u>국가보훈처장</u>의 인가를 받은 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로 한다.
- 제4조(도의 책무) 충청북도(이하 "도"라 한다)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<u>나라사랑 정신</u>을 선양하 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<u>조성하는데</u>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도민의 책무) 모든 도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<u>나라사</u>

라 <u>생명 또는</u>
2. <u>"국가보훈대상자"란</u>
<u>유족 또는</u> <u>가족</u>
<u>예우 및</u>
3 <u>이란</u>
<u>예</u> 우 및 지원과
제3조 <u>(예우 및 지원 대상)</u> <u>예우 및 지원 대상</u>
국가
<u>보훈부장관</u>
제4조(도의 책무)
<u>나라사랑정신</u>
<u>조성하기 위하여</u>
· 제5조(도민의 책무) <u>나라사랑</u>

<u>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</u> <u>하기 위하여</u> 국가와 도의 시책 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우와 공훈 선양사업) 충 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 다)는 <u>희생·공헌자의 예우와</u>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제7조(복지지원 등) 도지사는 관계법령이나 <u>조례가</u>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• 2. (생략)

제7조의2(보훈명예수당) ① 도지 사는 다음 각 호의 <u>요건을 모두</u> 갖춘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 (이하 "유족"이라 한다)에게 예 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(이 하 "수당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
제6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)
<u>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</u>
<u>우 및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</u>
<u> 나라사랑정신</u>
,
1. ~ 7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복지지원 등)
<u>조례에서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보훈명예수당) ①
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
<u>있는 65세 이상인 다음</u> <u>사</u>
<u>람</u>

1. 충청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

2. 65세 이상일 것

② <u>제1항에 따른</u> 수당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지급한다. 이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.

③ (생 략)

제9조(민간의 참여조성) 도지사는 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 랑정신의 선양, 보훈문화의 창 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<u>여건조성</u>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
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
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ㆍ
제5호에 따른 전몰군경・순직
군경의 유족(이하 "유족"이라
한다). 이 경우 유족의 범위는
법 제5조에 따른다.
2.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
<u>공상군경</u>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에
대한
③ (현행과 같음)
제9조 <u>(민간의 참여 조성)</u>
선양 및

----- <u>여건 조성</u>-----

관련법령 발췌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 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 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
 - 3. 전몰군경(戰歿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 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제5조(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배우자
 - 2. 자녀
 - 3. 부모
 - 4. 성년인 직계비속(直系卑屬)이 없는 조부모
 - 5. 60세 미만의 직계존속(直系尊屬)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(弟妹)

-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. 다만,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.
-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, 양자(養子)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.
-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,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.
-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,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1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
- 2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
- 3.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
- 4. 「병역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
-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,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.
- 제6조(등록 및 결정) ①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"신청 대상자"라 한다)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 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, 그 동의를 받은 경

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- 1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・공헌자의 경우
- 2.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
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
- ②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6조의2(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대 상자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.
 - 1. 사망한 경우
 - 2. 국적을 상실한 경우
 - 3.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 - 4.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
 - 5. 제7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
 - 6.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 경우
 - 7.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
 - 8. 성명,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
 - 9.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(身上) 변동이 있는 경우
 -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유족의 순위변경, 등록결정의 취소,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 사항을 그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)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

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·퇴 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·퇴직일 다음 날 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,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,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·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,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, 교육지원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·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.
- ③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79 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.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.
- ④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.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
- 2.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(欠缺)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

제12조(보상금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. 다만,

-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- 제13조(보상금 지급순위)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.
 - 1.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2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.
 -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,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나라를 위해 희생·헌신한 순직군경의 유족과 공상군경에게 합당한 예우를 통해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O 순직군경 유족 및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발생

3. 관련조문

○ 조례안 제7조의2(보훈명예수당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보훈부에 등록된 도내 65세 이상 순직군경 유족, 공상군경 대상 산출·순직군경 유족: 495명, 공상군경 본인: 562명
- 기 지원중인(전몰군경 유족, 독립유공자 유족, 특수임무유공자) 보훈명예 수당 지원금과 동일한 월 30천원으로 추계함
- 나. 추계 결과 : 24. 1월부터 향후 5년간 1,837,800천원 소요 예상
 - (순직군경 유족) 459명 × 30천원 × 12개월 = 165,240천원
 - (공상군경) 562명 × 30천원 × 12개월 = 202,320천원 연간 367,56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6. 작성자 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김경희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	입						
세	출	367,560	367,560	367,560	367,560	367,560	1,837,800
순직군경유족 보훈명예수당		165,240	165,240	165,240	165,240	165,240	826,200
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		202,320	202,320	202,320	202,320	202,320	1,011,600
자	원 조달						
	소 계						
의존	보조금						
재원	지방교부세						
	소 계	367,560	367,560	367,560	367,560	367,560	1,837,800
자체 수입	지방세	367,560	367,560	367,560	367,560	367,560	1,837,800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군비						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					